

의안번호	2211865
의 퇴 인	이용선의원
회 답 일	2025.8.29.
추계번호	25D4099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라 북한자료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북한자료의 수집·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800만원씩 총 4,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회의참석수당	4	4	4	4	4	20
전문인력 양성	4	4	4	4	4	20
합계	8	8	8	8	8	40

주 1.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본 추계는 북한자료심의위원회의 경우 민간위원 8명과 연도별 회의횟수 2회 가정하고, 전문인력 양성의 경우 통일부의 공공부문 통일교육 전문과정의 단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면 추가재정소요는 추계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북한자료심의위원회)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자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제1항)	의무규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제2항) 1.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2. 북한자료의 분류 기준 및 재분류에 관한 사항 3. 특수자료의 공개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의무규정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3항)	의무규정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1급 상당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함(제4항)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2. 북한 및 통일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의무규정
2	안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통일부장관은 북한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1. 북한자료의 수집·관리·이용에 관한 기본방향 2. 북한자료 분류체계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3. 북한자료 대국민 공개에 관한 사항 4. 북한자료의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5. 북한자료 관련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3	안 제10조(국립 평화통일자료원 설치 등)	북한자료의 효율적인 수집·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통일부에 국립평화통일자료원(이하 “자료원”이라 함)을 둔(제1항)	의무규정
		자료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제2항) 1.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북한자료 분류 및 재분류에 관한 사항 3. 북한자료 종합정보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취급기관 등의 연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북한자료를 이용한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6. 북한자료 연구·조사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4	안 제11조(북한 자료 연구·조사 연계 지원)	정부는 대학, 민간단체 및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북한 자료에 대한 연구·조사 및 연계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5	안 제12조(전문 인력 양성 등)	정부는 북한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북한자료심의위원회)	0	-
2	안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 (미대상)	현행 인력과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3	안 제10조(국립평화통일 자료원 설치 등)	- (미대상)	현재 통일부가 「정부조직법」 과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통일정보자료센터(국립평화통일자료원) 건립(2022~2026)을 통해 現 북한자료센터를 확대·개편 중임
4	안 제11조(북한자료 연구·조사·연계 지원)	- (미대상)	현재 통일부가 소장자료(12만여건)와 기사색인 DB(230만 여건)를 제공하고, 디지털아카이브시스템 구축을 통한 원문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구기관(통일연구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간 소장자료를 주기적으로 상호 교환 중임
5	안 제12조(전문인력 양성 등)	0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북한자료심의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안 제4조)과 전문인력 양성(안 제12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함
- 본 추계에서 북한자료심의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은 민간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추계하며, 그 밖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 안 제4조¹⁾에서 북한자료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통일부차관)과 부위원장 1명(국가정보원 1급 상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위원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전문지식·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함
 - 본 추계에서는 북한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이해를 넓히고 남북통합에 기여하려는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북한자료심의위원회 위원 15명 중 공무원위원은 7명, 민간위원은 8명으로 가정함
 - 북한자료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기본계획의 연도별 이행실적 점검과 북한자료의 수집·관리·분류기준 및 공개 기준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연도별 2회로 개최되는 것으로 하며, 회의참석수당 단가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²⁾을 참고하여 25만원으로 가정함
- 본 추계에서 전문인력 양성(북한자료 수집·관리)의 추가재정소요는 통일부가 실시한 공공부문 통일교육 전문과정의 단가에 통계청 발표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³⁾을 각각 적용하여 추계함

1) 제4조(북한자료심의위원회) ①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자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2. 북한자료의 분류 기준 및 재분류에 관한 사항

3. 특수자료의 공개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1급 상당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2. 북한 및 통일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 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 내로 편성

·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 회의안전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표 2] 통일부 공공부문 통일교육 전문과정: 2021년

교육대상	교육인원	교육횟수(기간)	교육방식	소요비용
통일·북한 등 관련 분야 7년 이상 경력자 또는 통일·북한 등 관련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36명	1회 (2021. 3.22.~4.6.)	원격 화상 교육 (2주)	3,280천원

-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북한자료심의위원회 민간위원 회의참석수당(안 제4조)

- 회의참석수당은 북한자료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인원에 회의횟수와 회의 참석수당 단가를 각각 곱하여 추계함
- 북한자료심의위원회 민간위원: 8명
 - 북한자료심의위원회의 회의건수: 연도별 2회
 - 회의참석수당 단가: 250,000원(회의참석+안전검토)
- 추계결과, 추계기간 동안 북한자료심의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의 추가재정소요는 다음 표와 같이 추정됨

[표 3] 북한자료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명, 회,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회의 참석 수당	지급인원(A)	8	8	8	8	8	—
	지급단가(B)	0.25	0.25	0.25	0.25	0.25	—
	회의횟수(C)	2	2	2	2	2	—
	소 계(D=A×B×C, 백만원)	4	4	4	4	4	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소비자물가상승률: 2022~2031년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소비자물가상승률	5.1%	3.6%	2.3%	1.9%	2.0%	2.0%	2.0%	2.0%	2.0%	2.0%

주 1. 2022년~2024년: 통계청 지표누리(<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26>)

2. 2025년 이후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나. 전문인력 양성 등(안 제12조)

- 전문인력 양성의 추가재정소요는 통일부 소관 “공공부문 통일교육 전문과정”의 소요비용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함
- 추계결과, 추계기간 동안 북한자료의 수집·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의 추가재정소요는 다음 표와 같이 추정됨

[표 4] 전문인력 양성의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전문인력 양성	4	4	4	4	4	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추계결과

- 제정안에 따라 북한자료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북한자료의 수집·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800만원씩 총 4,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회의참석수당	4	4	4	4	4	20
전문인력 양성	4	4	4	4	4	20
합계	8	8	8	8	8	40

주 1.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본 추계는 북한자료심의위원회의 경우 민간위원 8명과 연도별 회의횟수 2회 가정하고, 전문인력 양성의 경우 통일부의 공공부문 통일교육 전문과정의 단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면 추가재정소요는 추계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북한자료심의위원회의 경우 민간위원 8명과 연도별 회의횟수 2회 가정하고, 전문인력 양성의 경우 통일부의 공공부문 통일교육 전문과정의 단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면 추가재정소요는 추계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61	jsy@na.go.kr